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8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 교육감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와 특정업무 수행의 업무 공백 방지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별정직공무원 정원 증원하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등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78명 (7,627명 → 7,705명)

-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증 63명 (7,056명 → 7,119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5명 (565명 → 580명)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1)

- 지방공무원 종류 구분 자구 수정: 일반직 → 일반직·특정직
- 일반직·특정직 비율 조정: 감 0.1% (99.9% 이상 → 99.8% 이상)
- 별정직·정무직 비율 조정: 증 0.1% (0.1% 이내 → 0.2% 이내)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2)

- 제4호 별정직공무원 구분 및 비율 조정
 - 구분 조정: 5급상당, 6급상당 →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 비율 조정: 4급상당 15%이내, 5급상당 55%이내, 6급상당 이하 30%이상

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 78명 (7,627명 → 7,705명)
- 일반직 계: 증 57명 (7,059명 → 7,116명)
 - 4급: 증 1명 (39명 → 40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 증 1명 (28명 → 29명)
 - 5급 이하 소계: 증 57명 (6,976명 → 7,033명)
 - 전문경력관 소계: 감 1명 (8명 → 7명)
- 별정직 계: 증 6명 (2명 → 8명)
 - 4급상당: 증 1명 (0명 → 1명)
 - 5급상당 이하 소계: 증 5명 (2명 → 7명)
- 특정직 계: 증 15명 (565명 → 580명)
 -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증 1명 (50명 → 51명)
 - 본청(직속기관 포함)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 증 1명 (28명 → 29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4명 (515명 → 529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다.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2) 입법예고(2021. 9. 29. ~ 2021. 10. 5.)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6)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2]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7) 기타: [별첨 4] ~ [별첨 6]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627”을 “7,705”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56”
을 “7,119”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65”를 “580”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 특정직	별정직 · 정무직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 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05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16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0		29	11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7,033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8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627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u>7,056명</u> 3. 교육전문직원 정원 <u>565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705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2. ----- ----- ----- 3. ----- <u>580명</u> 												
<p>[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40%;">일반직</th> <th style="width: 50%;">별정직·정무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 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u>99.9% 이상</u></td> <td style="text-align: center;"><u>0.1% 이내</u></td> </tr> </tbody> </table> <p><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u>99.9% 이상</u>	<u>0.1% 이내</u>	<p>[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40%; color: red;">일반직·특정직</th> <th style="width: 50%;">별정직·정무직</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 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u>99.8% 이상</u></td> <td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ed;"><u>0.2% 이내</u></td> </tr> </tbody> </table> <p><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및 지방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구 분	일반직·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u>99.8% 이상</u>	<u>0.2% 이내</u>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u>99.9% 이상</u>	<u>0.1% 이내</u>											
구 분	일반직·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u>99.8% 이상</u>	<u>0.2% 이내</u>											
<p>[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p>	<p>[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p>												

현 행										개 정 안									
정기준(제3조 관련)										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3% 이내	23% 이상	0.2% 이내	0.0% 이내	0.3% 이내	0.7% 이상	비율	2% 이내	8% 이내	3% 이내	3% 이내	23% 이상	0.2% 이내	0.0% 이내	0.3% 이내	0.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										2. 기능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3. 연구직공무원: 삭제									
4. 별정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구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비율		15% 이내		55% 이내		3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5. 특정직공무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분		계	시의회사무처	분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구분		계	시의회사무처	분청	교육지원청	공립의각급학교			
총계		7,627								총계		7,705							
정무직계		1								정무직계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계		7,059								일반직계		7,116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2·3급	1		1			2·3급	1		1		
3급	9		9			3급	9		9		
3·4급	3		3			3·4급	3		3		
4급	39		28	11		4급	40		29	11	
4·5급	9		7	2		4·5급	9		7	2	
5급 이하 소계	6,976					5급 이하 소계	7,033				
전문경력관 소계	8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별정직 계	8				
5급상당 이하 소계	2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565					특정직 계	58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15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529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202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78명 증원, 이에 따라 인건비 상승

2. 비용추계의 전제

일반직 63명(별정직 6명 포함), 특정직 15명 증원에 따른 1인당 인건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세입	-							
	소계(a)							
세출	인건비	6,343,848	6,548,754	6,760,279	6,978,636	7,204,046	33,835,563	
	소계(b)	6,343,848	6,548,754	6,760,279	6,978,636	7,204,046	33,835,563	
□ 총 비용(a-b)		6,343,848	6,548,754	6,760,279	6,978,636	7,204,046	33,835,56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6,343,848	6,548,754	6,760,279	6,978,636	7,204,046	33,835,563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6,343,848	6,548,754	6,760,279	6,978,636	7,204,046	33,835,563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김산원 주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일반직: 63명 증원(별정직 6명 포함)
- 특정직: 15명 증원

2. 비용소요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1차년도 (2022년)	6,343,848	○ 인건비 추가 소요액: 6,343,848천원 - 일반직: 74,186천원 × 63명 = 4,673,718천원 - 특정직: 111,342천원 × 15명 = 1,670,130천원
2차년도 (2023년)	6,548,754	○ 인건비 추가 소요액: 6,343,848천원 × 103.23% = 6,548,754천원
3차년도 (2024년)	6,760,279	○ 인건비 추가 소요액: 6,548,754천원 × 103.23% = 6,760,279천원
4차년도 (2025년)	6,978,636	○ 인건비 추가 소요액: 6,760,279천원 × 103.23% = 6,978,636천원
5차년도 (2026년)	7,204,046	○ 인건비 추가 소요액: 6,978,636천원 × 103.23% = 7,204,046천원
계	33,835,563	

※ 비용추계 방법

- 1차년도

: [(2020년 총액인건비 세출결산액-대체인력 집행액) / 2020년 급여지급 현원] × 처우개선율 6.05% 적용(처우개선율 2년치 반영)

- 2차년도~5차년도

: 전년도 인건비 × 처우개선율 3.23% 적용(호봉승급분 1.83%, 공무원 처우개선율)

【별첨 2】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성명	김산원
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p>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원안동의 의견임</p>					원안동의

【별첨 3】

관 련 규 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과로 본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2. 27., 2020. 4. 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

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18. 2. 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5. 8., 2018. 2. 27.>

1. 본청의 과장·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3. 23., 2017. 5. 8., 2018. 2. 27.>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8., 2013.12.4., 2018.2.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별첨 4】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2021. 9. 1. 기준

순	시도명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고
1	서울	99.9% 이상	0.1% 이내	
		7,059명	3명	
2	부산	99.7% 이상	0.3% 이내	
		3,602명	7명	
3	대구	99.7% 이상	0.3% 이내	
		2,579명	3명	
4	인천	92.2% 이상	0.2% 이내	
		3,219명	3명	
5	광주	99.8% 이상	0.2% 이내	
		1,666명	3명	
6	대전	99.8% 이상	0.2% 이내	
		1,786명	3명	
7	울산	99.5% 이상	0.5% 이내	
		1,663명	4명	
8	세종	99.4% 이상	0.6% 이내	
		795명	4명	
9	경기	99.9% 이상	0.1% 이내	
		13,027명	8명	
10	강원	99.5% 이상	0.5% 이내	
		3,724명	5명	
11	충북	99.7% 이상	0.3% 이내	
		3,082명	8명	
12	충남	99% 이상	1% 이내	
		3,832명	3명	
13	전북	99.8% 이상	0.2% 이내	
		4,044명	5명	
14	전남	99.8% 이상	0.2% 이내	
		4,838명	5명	
15	경북	99.5% 이상	0.5% 이내	
		5,002명	1명	
16	경남	99.8% 이상	0.2% 이내	
		5,386명	6명	
17	제주	99.5% 이상	0.5% 이내	
		1,327명	4명	
-	서울특별시	99% 이상	1% 이내	소방, 경찰공무원 제외
		10,626명	41명	

【별첨 5】

시도교육청 별정직공무원 정원 현황

2021. 9. 1. 기준

순	시도명	별정직			비고
		4급상당	5급상당 이하	계	
1	서울		2명	2명	
2	부산		6명	6명	
3	대구		2명	2명	
4	인천	1명	2명	3명	
5	광주		2명	2명	
6	대전		2명	2명	
7	울산		3명	3명	
8	세종		3명	3명	
9	경기		7명	7명	
10	강원		4명	4명	
11	충북	1명	6명	7명	
12	충남		2명	2명	
13	전북		4명	4명	
14	전남		4명	4명	
15	경북		0명	0명	
16	경남	1명	4명	5명	
17	제주		3명	3명	
-	서울특별시	5명	32명	37명	소방,경찰공무원 제외

【별첨 6】

2022년 총액인건비 예비통보 내역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 지방공무원 증원: **83명** (일반직 65명, 특정직 18명)

1. 일반직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A)	2022년 예비통보(B)	증감 (B-A)	비고
기준인원	7,082	7,147	65	
총액인건비	554,353,237	553,842,471	-510,766	기준단가 감소

※ 증원 내역 (총 **65명**: 국가정책수요 **-10명**, 지역현안수요 **18명**, 자체수요 **57명**)

구분	내역	인원	비고
국가정책수요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1	회수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지원	-20	회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	
	유아 NEIS 구축·운영	2	
	학원 불법 교육 및 코로나 19 점검	1	
	교육회복 지원	1	
	다문화 교육지원	1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1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지원 체계구축	1	
	안전보건체계 강화 지원	1	
	학교돌봄터 사업	1	
	소계	-10	
지역현안수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	2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교육시설법 추진	16	
	소계	18	
자체수요	학교 신설 등	57	
계		65	

2. 특정직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A)	2022년 예비통보(B)	증감 (B-A)	비고
기준인원	556	574	18	
총액인건비	66,468,815	67,372,102	903,287	

※ 증원 내역 (총 18명: 국가정책수요 12명, 자체수요 6명)

구분	내역	인원	비고
국가정책수요	기간제교원 자격연수	-1	회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고졸취업지원 및 직업 교육	2	
	교육정책협력관	1	
	교육회복 지원	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1	
	인공지능(AI) 교육기반 조성	1	
	자유발행 인정도서 개발	1	
	초중등 학교현장 실습학기제	1	
	탄소중립 기반 학교환경 조성·지원	1	
	소계	12	
자체수요	신규사업 인력 등	6	
계		18	

□ 조례(2022.1.6. 공포 예정) 개정 반영 인력

1. 일반직: 63명(추후 조례 개정 시 2명 증 추진)
2. 특정직: 15명(추후 조례 개정 시 3명 증 추진)

□ 추진 일정

순	추진 업무	추진일정	비고
1	정원조례 개정안 수립	2021. 9. 29.(수)	
2	입법예고 및 각종 영향평가 실시	2021. 9. 29.(수) ~ 2021. 10. 5.(화)	
3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2021. 10. 8.(금)	
4	정원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제출	2021. 10. 15.(금)	
5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예정)	2021. 12. 22.(금)	
6	정원조례 공포(예정)	2022. 1. 6.(목)	
7	정원규칙 개정 - (2022. 1. 10.) 정원규칙 개정안 - (2022. 1. 11. ~ 1. 20.) 입법예고 - (2022. 1. 28.) 법제심의위원회 - (2022. 2. 14.) 교육부 보고 - (2022. 3. 1.) 규칙 시행	2022. 1. 10.(월) ~ 3. 1.(화)	※ 별정직 증원 규칙 개정은 2022.7.1.자에 맞춰 별도 추진